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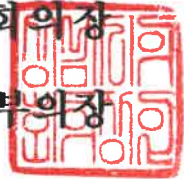
## 2026년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계획 공고

「지방공무원법」제66조의2 및 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」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3월 18일

성남시의회 의장

직무대리 부의장



### 1. 신청대상

- 「공무원연금법」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 공무원(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규정 제7조의2)

### 2.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

구 분	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	명예퇴직 예정일
4급 이상	매월 1일 ~ 10일	매월 말일
5급 이하	수 시	신청일 지정일

※ 단, 「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」 제3조에 따라 수시 신청 가능

### 3. 신청절차

-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「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」와

「명예퇴직원」 등을 작성하여 의회사무국 인사운영팀에 제출

## 4. 대상자 선정

□ 성남시의회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여부 결정

○ 제외대상자

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3조제3항(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제외)

③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가.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

나.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

다.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

라.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

2.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사람

3.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·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사람

4.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(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)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중 정무직공무원(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)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

5.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

## 5. 기간계산

□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 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산정

□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「지방공무원법」상의 정년을 기준으로 함

## 6.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

□ 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

○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

- 정년잔여기간 1년이상 5년이내: 월봉급액(기본급)의 반액 × 정년잔여월수
- 정년잔여기간 5년초과 10년이내: 월봉급액(기본급)의 반액 × [60+(정년잔여월수-60)/2]
- 정년잔여기간 10년 초과자: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와 동일
-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 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의 다음달 1일을 기준으로 산정
-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정년 기준
-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보수 규정」에서 정하는 금액
  - 호봉제 적용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
  -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(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)의 78퍼센트[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급(상당) 공무원은 84퍼센트]의 68.54퍼센트[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12에 해당하지 않는 5급(상당) 공무원은 67.5퍼센트]를 적용

## 7. 수당 지급일 및 지급방법

□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세액공제 후 계좌입금

※ 기타 상세한 내용은 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규정」 및 「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」 참고

- 붙임 1.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서식 1부.  
2. 명예퇴직원 서식 1부. 끝.

■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[별지 제1호서식]

#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

\*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"√"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7조·제8조에 따른
------	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신청인 기재란	① 소속	③ 공무원 구분 [ ] 일방직( )	④ 직급·계급·직무군 (호봉)		
	② 전(前) 소속 (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 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)				
	⑤ 성명 한글	⑥ 생년월일			
	한자	⑦ 주소	□□□-□□□		
⑧ 전화번호(자택)	⑨ 근속기간	년 월	⑩ 정년일		
⑪ 비위·형벌 사항 [ ] 있음 [ ] 없음	[ ] 비위조사 중 [ ] 수사진행 중 [ ] 형사재판 계류 중 [ ]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[ ] 징계처분 요구 중 [ ] 징계의결 요구 중 [ ]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형(刑) 확정(확정일: ) 형량: ) [ ]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(선고일: ) 선고형: ) [ ] 「형법」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(직무 관련) 형 확정 (확정일: ) 형량: ) [ ] 「형법」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(직무 관련) 형의 선고유예 (선고일: ) 선고형: )				

수속 기재란	⑫ 정년 구분 [ ]연령정년 [ ]계급정년	⑬ 정년	세(년)		
	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	[ ] 임기제 [ ] 별정직	년 월	확인 인사담당관 (인)	
	⑮ 정년잔여기간 (수당 지급대상기간)	년 개월 (년 개월)	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		
	⑰ 비위·형벌 사항 확인 [ ] 있음 [ ] 없음	[ ] 비위조사 중 [ ] 수사진행 중 [ ] 형사재판 계류 중 [ ]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[ ] 징계처분 요구 중 [ ] 징계의결 요구 중 [ ]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형(刑) 확정(확정일: ) 형량: ) [ ]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(선고일: ) 선고형: ) [ ] 「형법」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(직무 관련) 형 확정 (확정일: ) 형량: ) [ ] 「형법」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(직무 관련) 형의 선고유예 (선고일: ) 선고형: )			
확인	인사담당관 (인)	연금담당관 (인)	감사담당관 (인)		

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원와 같이 신청합니다. 신청인 년 월 일 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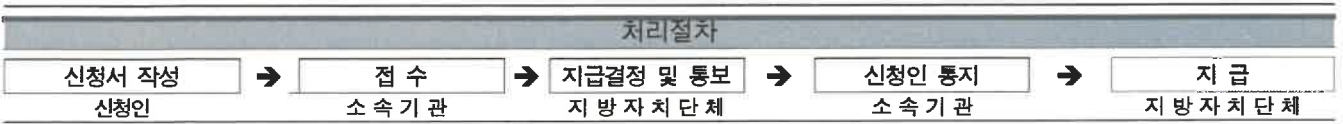
첨부서류 1.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. 다만,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  
 2. 명예퇴직원(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(표준안)」 별지 제2호서식) 1부  
 3. 경력증명서 1부(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

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. 년 월 일

소속기관의 장 직인

성남시의회 의장 귀하

비고: 1.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,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·연금·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.  
 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.



작성방법

1.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을,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전의 소속기관을 적습니다.
2. ③란은 해당란( )에 "√"표시를 하고, 특정직공무원(소방·교육 공무원 등)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( )에 적습니다.
  - \*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,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일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적습니다.
3. ④란을 적을 때에는,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신분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 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직전의 직급(계급)·직무군(전문경력관의 경우)·호봉을 적습니다.
4. ⑨란은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3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적되,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
5.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"√"표시를 하고,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확정일과 형량을 적고,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일과 선고형을 적습니다.
6. ⑫ ~ ⑰란은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관·연금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적습니다(⑭란은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 근무기관의 인사담당관이 적습니다).
7. ⑫란은 해당란에 "√"표시를 합니다.
8. ⑬란은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에 따라 해당 정년을 "세" 또는 "년"으로 적습니다.
9. ⑮란은 명예퇴직 예정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습니다.
10. ⑰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 파악·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 공무원이 작성하되("√" 표시), 직급과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.

■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[별지 제2호서식]

## 명 예 퇴 직 원

1. 소 속:

2. 직 위:

3. 직급·계급:

4. 성 명:

○ 명예퇴직 사유:

※ 명예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,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, 직위, 시기(기간) 등을 명시합니다.

○ 명예퇴직 신청일:

○ 명예퇴직 희망일:

※ 명예퇴직 희망일은 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시 명예퇴직 신청자만 적습니다.

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([ ]정기·[ ]수시) 명예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성남시의회 의장 귀하